

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상환방법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상환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종료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기간 중 자유로이 원금을 상환하되, 대출기간 종료일에 나머지 원금을 상환합니다.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상환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( )년( )개월 동안 거치(이자만 납부)하고, ( )년( )월( )일부터 매 1개월 마다 (□원금, □원금과 이자)를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거치기간 없이 매 1개월 마다 (□원금, □원금과 이자)를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금 중 금( )원은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종료일에 상환하며, 나머지 원금은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( )년( )개월 동안 거치(이자만 납부)하고, ( )년( )월( )일부터 매 1개월 마다 (□원금, □원금과 이자)를 균등분할하여 상환합니다<br>※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를 적용한 (원금과 이자)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,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분할상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<sup>주2)</sup> | 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 이자는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상환원금 상환일에 지급합니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기간 시작일의 해당일을 매월 결산일로 하여 지급합니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매월 ( )일에 지급합니다. (한도거래 결산일)     |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자동이체일(개별)                  | 매월 ( )일 <sup>주2)</sup>   | 자동이체 계좌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대출금 입금 계좌                  | 예금주( ) 은행명 ( ) 입금계좌번호 ( )  |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원금, 이자, 수수료 및 비용 지급 동의     | 본인이 부담할 원금, 이자, 대출관련 수수료 및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출금 동의 없이 대출금 입금 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지급처리에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.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인지세(50% 고객부담분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증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험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비용 ( ) |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<b>(근)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</b> |  |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종별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서번호   | 명의인 또는 위탁자   | 질권설정금액 | 20 . . . . . 까지<br>입금총액 | 증서일자 | 지급기일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좌번호   | 수익자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
주 1) 대출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,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 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)로 이연되며,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.

주 2) ① 은행 자동이체 일괄 처리시간(저녁 6시) 이후에 상환자금을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카드대금결제, 계좌간 자동이체 등 각종 자동이체 처리 순서에 따라 지급 처리되므로, 잔액이 부족하여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모바일앱(이하 "모바일앱")을 통해 직접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② 은행 자동이체 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,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 영업일(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)에 자동이체 처리됩니다.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, 해당일에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시간에 제약없이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. 마이너스 통장방식의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결산일에 처리하되, 한도초과 금액 발생시 상환기일은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.

③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등 증권류의 금액인 경우에는 결제될 때까지 지급가능금액에서 제외되므로, 자동이체일 당일에 입금한 경우에는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
## 제 2 조 대출금리의 변동

① 제 1 조의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시작일 현재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해 결정되며,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금리는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합니다.

② **고정금리 대출**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3 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.

③ **변동금리 대출**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, 기준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.

1. **신규취급액기준 COFIX**는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(6개월)가 도래하는 날에 2영업일 전의 전국은행연합회 최종 고시 금리를 적용합니다.
2. **금융채유통수익률**(3개월물, 6개월물, 1년물, 5년물)은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(3개월, 6개월, 1년, 5년)가 도래하는 날에 2영업일 전의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금융채(AAA)유통수익률을 적용합니다.
3. **국고채권 유통수익률**(5년물)은 대출기간 시작일과 매 금리변동주기(5년)가 도래하는 날에 2영업일 전의 한국금융투자협회 최종 고시 국고채권 유통

# B

수익률을 적용합니다.

- ④ **수신금리 연동 기준금리**는 예·적금·담보대출에 적용하며, 담보 예·적금의 수신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.
- 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하여 적용하는 금리로 본인의 신용, 담보조건, 대출기간 및 은행거래상황에 따라 결정되며,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. 단, 대출기간 중 조건변경을 하거나 대출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변경된 조건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제 3 조 지연배상금 (연체이자)

- ① 이자·분할상환금·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지급 기일(이하 "약정 납입일")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,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대출기간 종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(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)을 상실한 경우에는,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남아있는 대출원금에 대하여,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③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시작일자(연체발생일)은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로 하며, 약정 납입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.
- ④ 연체중인 분할상환금(원금과 이자)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시작일자(연체발생일)은 약정 납입일의 다음 날로 하며, 해당 분할상환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.
- 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거래인 경우, 약정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, 이를 곧 갚기로 하며, 한도를 초과한 금액(이하 "미수이자")에 대하여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미수이자 발생 시점으로부터 계속하여 1 개월 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,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남아있는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⑥ 본인 명의의 예·적금을 담보로 한 예·적금·담보대출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되, 약정 납입일에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, 1 개월 간 갚지 않으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, 이에 곧 대출금을 갚기로 합니다.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 조에 의해 대출금과 담보 예·적금을 상계하기로 합니다.

## 제 4 조 마이너스 통장 방식 한도거래에 대한 약정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연계된 입출금 계좌(이하 "모계좌")에 입금된 자금(다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등 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,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)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(상환)에 충당하기로 하며, 지연배상금, 미수이자, 대출원금의 순서로 갚도록 합니다.
-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요구(입출금 계좌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대금청구 포함)하거나,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에 연결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매월 결산일에 전월 결산일 익일부터 당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대출이자를 산정하고, 결산일에 모계좌에서 지급하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합니다.
- ④ 대출이자 계산을 위한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.
  - $\text{대출사용금액} = \text{해당일 마감시점 대출잔액} + (\text{해당일 하루 중 최고 대출잔액} - \text{전일자 마감시점 대출잔액 또는 해당일 마감시점 대출잔액 중 큰 금액})$
  - 「대출잔액」은 모계좌에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된 금액을 의미하며, 최고 대출잔액이란 절대값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최고값을 의미합니다.
  - 「마감」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(24:00)을 의미합니다.
- ⑤ 대출한도금액 사용 제한
  1. 은행은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(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 3 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)·대지급(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(또는 정부)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) 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 정보,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.
  2. 은행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  3. 제 1 호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 은행은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니다.



## 제 5 조 중도상환해약금

-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(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, 이하 같음)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 1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 1 조의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 1. 「대출기간」은 최초 대출기간 시작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, 3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 년을 적용합니다.
  2. 「중도상환대출금액」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 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.
  3. 「대출잔여일수」는 중도상환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,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분할상환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.
  1.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 개월 미만인 경우
  2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제 10 조에서 정한 상계 등의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
  3.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
  4.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

##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제 1 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## 제 7 조 담보권 설정

-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 1 조에 표시된 (근)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 1 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·수익권(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)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·수익의 수익권, 특별장려금,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.
- ③ 예금 등이 기간연장·개서·갱신·분할·병합·증액·감액 또는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,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.
- ④ 은행은 제 1 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제 1 조에 표시된 (근)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8 조 담보·보험

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,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

## 제 9 조 대출채권의 양도·신탁 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 특약 사항

-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및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 3 자에게 양도(신탁 포함)가 가능함을 이해합니다. 또한,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,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로 합니다.
- ② 본인은 제 1 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항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확정됨에 동의하며, 본인은 피담보채권(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채권)의 확정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더 이상 추가대출 등에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,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- ③ 본인은 제 1 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, 상속, 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 3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 3 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- ④ 본인은 제 1 항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과 대출채권 등의 양도일까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
# B

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대하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통지를 서면으로 하여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안 경우에는 본인은 양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10 조 자동연장 및 자동상환

① 대출기간 종료일 도래 전, 기한연장에 대한 내부 심사를 통해 승인 결과가 안내되며, 기한연장 조건에 동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종료일에 대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 단, 대출기간 종료일 기준,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취급 거절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환조건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.

②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기한연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 종료일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0 조에 의해 상계하기로 합니다. 단, 자동이체 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대출금 상환금액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동 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며, 본인은 이를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.